

공업발전법 개정안 주요배경과 내용

1. 개정배경

가. 현행법의 주요내용

- 장기발전방향 및 경쟁력강화 시책의 수립
 - 장기산업발전방향(10년 단위) 및 산업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수립
- 합리화업종 지정 및 합리화사업 추진
 - 구조불황업종 등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여 권고·조정, 시설·설비 등록, 세제·금융지원 등 합리화 사업을 추진
- 공업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사업: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
- 산업기반기금 운영 :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산업기반 구축 지원
- 공업발전심의회 운영 : 공업발전정책에 대한 심의

나. 개정사유

'86. 1월 기계공업육성법, 철강공업육성법 등 7개 개별산업육성법을 통합하여 「공업발전법」을 제정 · 운용중이나 WTO출범('95), OECD가입('96), IMF경제위기 등 법개정이후 경제여건이 크게 변화됨에 따라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추진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체제 구축, WTO체제하의 산업지원제도 개선, 글로벌경제체제하의 국제산업협력 등 산업정책추진체제의 종합정비가 필요하다.

2. 주요내용

가. 개정안 개요

-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
 - 미래 유망신산업의 창출 촉진 : 21세기 지식·정보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
 - 지방산업의 진흥 : 지방산업진흥시책수립·추진, 지방·낙후지역으로의 공장이

전 지원

- 사업전환 등의 유도 : 사업전환등의 촉진을 위한 세제·금융지원

- 산업조직의 효율화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 강화
 - 기업간협력의 촉진 : 공동기술개발 등 기업간협력사업 지원
 - 기업경영능력의 증진 : 경영능력증진 유도, 경영 상담업 육성 등

-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: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도입

- 국제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-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현 공업발전심의회 및 분과별 협의회를 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로 개편하고 활동에 독립성 보장

산업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정비함에 따라 법령명도 현 『공업발전법』에서 『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』으로 변경

나. 개정안 주요내용

■ **중·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제시(제4조)**

-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 단위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.

■ **산업의 경쟁력강화(제5조 ~ 제8조)**

- 미래 유망신산업의 창출 촉진(제6조)
 - 21세기 지식·정보 중심의 산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미래 유망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한다.

▼ **중·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제시(제4조)**

현행(공업발전법)	개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10년 단위로 수립	5년 단위로 수립(\$4)

▼ **산업의 경쟁력강화(제5조~제8조)**

현행(공업발전법)	개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산업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	- 산업부문별 경쟁력강화시책(\$5) - 미래 유망신산업의 창출촉진(\$6, 신설) - 지방산업의 진흥(\$7, 신설) - 사업전환 등의 유도(\$8, 신설)

▼ **산업조직의 효율화 유도(제9조~제11조)**

현행(공업발전법)	개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-업종전문화 유도(선언적 규정)	- 사업전문화유도시책 추진(\$9, 보완) - 기업간협력의 촉진(\$10, 신설)

- 지방산업진흥시책 수립·추진(제7조)
 - 시·도별 지방산업진흥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한다.
 - 지방 및 낙후지역에 설립·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 등에 대한 세제·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.
- 사업전환 등의 유도(제8조)
 - 사업전환과정에서 방출되는 경영자원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유희설비처리, 고용조정 등의 사업에 대한 세제·자금을 지원한다.
 - 유희설비 등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「유희설비거래센터」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
■ **산업조직의 효율화 유도(제9조 ~ 제11조)**

- 사업전문화유도시책 추진(제9조)
 -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한다.
- 기업간협력의 촉진(제10조)
 - 부품 등의 공용화사업, 공동기술개발사업, 공동판매사업 등 기업간 협력사업에 대해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 -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간협력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다.
 - 기업간협력 증개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「기업간협력지원센터」의 설립근거를 마련한다.

■ **기업 구조조정의 촉진(제12조 ~ 제23조)**

- 전문회사의 주요업무(제12조)
 - 구조조정 기업* 인수
 - 인수기업 회생조치(Restructuring) : 경영진교체, 조직합리화 등
 - 인수기업 매각 : 인수기업의 정상화 후 주식 및 자산의 국내외 매각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

* <참고> : 구조조정기업의 정의

▼ 기업구조조정촉진(제12조~제23조)

현 행(공업발전법)	개 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(관련규정 없음)	-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 도입 (§12~23, 신설)

▼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관리개선(제33조 ③)

현 행(공업발전법)	개 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(관련규정 없음)	-사업시행에 따른 환수금을 회수하여 동사업에 재출연 (§33 ③, 신설)

▼ 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확대(제40조)

현 행(공업발전법)	개 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촉진, 유통산업구조개선 등에 사용	신산업창출 관련사업, 지방산업진흥, 공장 등의 지방이전, 사업전환 등의 유도 등으로 사용범위 확대 (§40, 추가)

-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차원에서 매각되는 계열사
-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
- 부도기업 및 파산·화의·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기업
- 구조조정조합의 결성(제13조)
 - 전문회사가 외국인투자가·일반투자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결성 허용(인수·재매각 후 수익분배)
- 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지원(제18조, 제19조)
 -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근거 마련
 - 전문회사에 대해 지주회사 기능허용
 - 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로 간주

-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 및 인수제한(제17조)
 - 대규모기업집단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경우 동일 계열사에 대한 투자 및 인수 금지
 - ※ 지주회사 특례허용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이 전문회사를 자신의 지주회사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보완장치
 - 전문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의 투자 및 인수 금지
 - ※ 전문회사의 투자·인수가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
- 전문회사의 설립 및 감독(제12조, 제16조, 제21조)
 - 설립 : 자유로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인·허가가 아닌 등록제 채택(일전요건 충족시 자동 등록)
 - ※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

- 감독 : 전문회사·조합에 대해 회계연도별 결산서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전문회사 및 조합에 대한 보고·감사

■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관리개선(제33조 ③)

-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수된 출연금을 기술 개발사업에 재출연,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(제33조③)
 - ①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,
 - ② 출연사업의 실패 및 중도포기,
 - ③ 출연사업 정산결과 잔액의 발생 등
- ※ 출연금이 환수되는 경우 예 산회계법 제1조 및 제47조는 일반회계 예산에 재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■ 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확대(제40조)

- 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지원요를 반영하여 산업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.

■ 산업정책심의기구(제41조~ 제43조)

- 그간, 공업발전심의회 운영에 지나친 정부간여로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"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" 및 "분과위원회"로 개편

▼ 산업정책심의기구(제41조~제43조)

현 행(공업발전법)	개 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-공업발전심의회 및 분과별협의회	-산업구조고도화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(§ 41~42) -심의회활동의 독립성 보장 (§ 43)

▼ 국제산업기술협력(제47조~제51조)

현 행(공업발전법)	개 정(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)
(관련규정 없음)	- 국제산업·기술협력진흥시책 수립 (§47) - 주요국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(§48) - 민간산업협력활동 지원 (§49) - 주요국별 산업협력재단 설립 (§50) - 민간전문가 활용 (§51)

3. 기대효과

- 1) 특정업종 중심의 산업지원방식에서 업종특정성이 없는 일반지원방식으로 정책지원방식을 전환한다.
 - WTO규정에 위배되는 「업종특정성」문제 해결
- 2) 사업전문화 유도, 불황업종기업 퇴출 촉진,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한다.
 - 시장실패 보완 및 시장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정책 운용
 - 직접지원은 WTO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(낙후지역지원 등)
- 3) 글로벌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산업정책도 Global Standard 채택한다.
 - WTO, OECD에서 권고하는 시장중심의 산업정책 반영
- 4) 변화된 글로벌 무한경쟁의 산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.
 - 산업구조정책, 산업조직정책, 국제산업협력 등 전반적으로 산업 발전체제 강화
- 5) 첨단·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하여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한다.
 - 미래 유망산업 창출 촉진 및 산업부문별 경쟁력강화 시책 등의 추진을 통해 산업구조의 개편을 촉진

하고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한다.

-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.

- 심의회활동 경비 및 조사사업비를 정부예산에서 지급(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.)

※ 일본의 산업구조심의회의 경우, 통상성공무원 및 퇴직자, 통상산업연구소 연구원은 위원이 될 수 없고, 예산전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.

■ 국제산업 기술협력 (제47조 ~ 제51조)

·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수행되고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.

※ 현재 한·미, 한·일, 한·EU, 한·아세안 등 4개 국

제 산업 기술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명시적 법적근거는 없다.

● 「국제산업·기술협력진흥시책」의 수립·시행(제47조)

- 주요 외국과의 산업·기술협력진흥시책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한다.

● 「국제산업협력위원회」의 설치·운영(제48조)

- 국제산업·기술·투자협력의 증진을 위해 주요국가와의 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.

● 국내기업, 대학, 단체 등 민간의 국제산업협력활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.(제49조)

● 특정 국가(지역)와의 산업·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산업협력재단의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한다. (제50조)

< 참고 > 공업발전법 개정안 전문은 본회 기획과로 문의 Tel:553 - 0941(302)